

“함께 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 제 목 「2022년도 재무제표 관계 서류(2차 실적신고) 접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202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온라인 신고(서류 제출 불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조)

5. 이에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 고용평가제 등 관계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고기간(토·일요일은 미접수)

유 형	재무제표 관계서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대 상	'22 12 31 현재 종합건설업을 등록(보유)한 건설사업자	좌 동	좌 동
	(추가) '23 1.1 이후 시설물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한 자	대상 아님	대상 아님
기 간	'23. 4. 3(월) ~ 4. 17(월)*	좌 동	좌 동
신고시스템 접속기간	3. 30(목)(예정) ~ 4. 17(월) (siljuk.cak.or.kr)	3. 20(월)(예정) ~ 4. 17(월) (hado.cak.or.kr)	3. 20(월)(예정) ~ 4. 17(월) (goyong.cak.or.kr)
프로그램사용료 및 교재비 (VAT포함)	-	회 원 사 29,700원 비회원사 49,500원	회 원 사 29,700원 비회원사 29,700원
비 고	신고내용을 확정된 경우라도 건설사업자가 스스로 확정 취소/수정 및 재확정 가능 (신고기한에 한함)	-	-

## 6. 유의사항

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한 경우, 재무제표관계서류(2차) 신고 방법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와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함께 신고

※ 업종전환한 경우만 신고시스템(재무제표관계서류(2차)) 내에 해당메뉴가 나타남

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다. 기타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 7.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재무제표 관계서류	- 건설공사실적신고(II) 표지 <sup>1)</sup>	필 수	
	- 재무제표		감 사 보 고 서 (외부감사 대상 업체) 재무제표확인원 (외부감사 이외 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건설기술인 관련 서류 <sup>2)</sup>		
	- 현금흐름표	선 택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확인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 기타 서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공 통	
	- 청렴서약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인정 확인서) 또는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협약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온라인 신고로 진행하고 제출서류는 없음 ※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한 경우만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기타서류 제출	-	

1) 시설물업종에서 전환한 업체의 경우, 건설공사실적신고(II) 표지 상단에 “시설물전환” 이라고 표시될 예정

2) 건설기술인 관련 서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8. 제출방법

- 방문제출 :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원지원실)
- 우편제출 :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담당자
- 문 의 처 : (02) 3218-9121~4  
※ 우편접수는 신고 마감일(4.17)까지 도착분에 한함

- 붙 임 : 1. 2022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요령 1부.  
2. 202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접수요령 1부.  
3. 2023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안내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자

---

부장 대우 안경희 실장 신수길 사무처장 2023.03.15  
진장욱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649 ( 2023.03.15.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23 /전송 02-6234-0919 / [khahn@cak.or.kr](mailto:khahn@cak.or.kr) / 공개